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세입예산

■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최종 예산대비 19.2% 감액된 6억3천3백만원임.

※ 2019년도 당초예산 6억 4,845만원 대비 2.3% 감액(1,510만원)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648,448	784,048	633,350	△ 15,098	△ 150,698	△ 2.3	△ 19.2
세외수입	23,870	23,870	20,186	△ 3,684	△ 3,684	△ 15.4	△ 15.4
경상적세외수입	6,538	6,538	6,922	384	384	5.9	5.9
재산임대수입	6,066	6,066	6,423	357	357	5.9	5.9
이자수입	472	472	499	27	27	5.7	5.7
임시적세외수입	17,332	17,332	13,264	△ 4,068	△ 4,068	△ 23.5	△ 23.5
기타수입	17,332	17,332	13,264	△ 4,068	△ 4,068	△ 23.5	△ 23.5
보조금	624,578	760,178	613,164	△ 11,414	△ 147,014	△ 1.8	△ 19.3
국고보조금 등	624,578	760,178	613,164	△ 11,414	△ 147,014	△ 1.8	△ 19.3
국고보조금	624,578	760,178	613,164	△ 11,414	△ 147,014	△ 1.8	△ 19.3

※ 장 관 향으로 작성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648,448	784,048	633,350	△15,098	△150,698	△2.3	△19.2
경상적세외수입	6,538	6,538	6,922	384	384	5.9	5.9
재산임대수입	6,066	6,066	6,423	357	357	5.9	5.9
공유재산임대료	6,066	6,066	6,423	357	357	5.9	5.9
이자수입	472	472	499	27	27	5.7	5.7
기타이자수입	472	472	499	27	27	5.7	5.7
임시적세외수입	17,332	17,332	13,264	△4,068	△4,068	△23.5	△23.5
기타수입	17,332	17,332	13,264	△4,068	△4,068	△23.5	△23.5
시·도비반환금수입	17,332	17,332	13,264	△4,068	△4,068	△23.5	△23.5
보조금	624,578	760,178	613,164	△11,414	△147,014	△1.8	△19.3
국고보조금 등	624,578	760,178	613,164	△11,414	△147,014	△1.8	△19.3
국고보조금	624,578	760,178	613,164	△11,414	△147,014	△1.8	△19.3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72억 5천 3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8억 3백만원 대비 6.6% 증액된 수준이며, 201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반영한 최종예산 73억 1천 3백만원 대비 0.8%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7,313,064	7,253,497	△59,567	△0.8	
행정관리	소 계	7,313,064	7,253,497	△59,567	△0.8
	행정운영경비	157,731	157,731	0	0
	재무활동	70	0	△70	△100
	사업비	7,155,263	7,095,766	△59,497	△0.8
교 부 금	0	0	0	0	

○ 202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6,803,464	7,313,064	7,253,497	450,033	6.6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6,645,663	7,155,263	7,095,766	450,103	6.8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366,121	366,121	720,453	354,332	96.8
을지태극연습준비 및 실시	293,873	293,873	233,244	-60,629	-20.6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72,248	72,248	487,209	414,961	574.4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36,665	36,665	31,255	-5,410	-14.8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6,665	36,665	31,255	-5,410	-14.8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726,680	726,680	764,590	37,910	5.2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93,480	93,480	123,480	30,000	32.1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350,000	350,000	0	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200	63,200	63,200	0	0.0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20,000	220,000	227,910	7,910	3.6
사회복무요원 관리	669,067	669,067	682,087	13,020	1.9
사회복무요원 관리	669,067	669,067	682,087	13,020	1.9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4,221,136	4,436,736	4,256,573	35,437	0.8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0	5,600	0	0	
민방위교육운영비	647,120	647,120	625,005	-22,115	-3.4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30,875	0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1,410	331,410	188,962	67,552	55.6
민방위교육장 운영	171,731	171,731	161,731	-10,000	-5.8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50,000	0	0.0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3,200,000	3,200,000	3,200,000	0	0.0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625,994	919,994	640,808	14,814	2.4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37,406	37,406	33,383	-4,023	-10.8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588	882,588	607,425	18,837	3.2
행정운영경비	157,731	157,731	157,731	0	0.0
기본경비	157,731	157,731	157,731	0	0.0
재무활동	70	70	0	-70	-100.0
보존지출(반환금및기타)	70	70	0	-70	-100.0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세외수입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사·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전년 최종예산(2,387만원) 대비 15.4%(368만원) 감액된 2,019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25.2㎡)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654만원) 대비 5.9%(38만원) 증액된 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낙찰가액(2018년 2월, 1천 8백 2십만원, 3년)에 재산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3차년도 임대료¹⁾를 적용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한편, 본 '공유재산임대료'는 3년 주기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최고입찰가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고, 2020년 임대료는 월 53만 5천원 수준으로, 현 임대기간(2018.3.2.~2021.3.1.)에 대한 입찰자 수가 3명에 그쳤는바, 차기 공개입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입찰자 모집 방안 마련을 통한 임대료 수익 제고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입찰조서

출력일시: 2018년 02월 23일 14시 48분 24초

기관명 : 서울특별시

공고명	서울 성북구 화양로 376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공고번호	201802-04081-00
입찰번호	0001	기관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73호
물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양동 376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근린생활시설	물건관리번호	2018-0200-004272
담당부점	서울특별시	경쟁방식/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
최저입찰가	10,431,720 원 [공개]	참가수수료	0 원
보증금 등록계좌	1006001286640 (우리)	참가수수료 등록계좌	(우리)
입찰등록수수료	면제	낙찰수수료 *1)	108,000 원
입찰기간	2018-02-08 18:00 ~ 2018-02-14 16:00	개찰일시	2018-02-23 10:00
입회점사역	고경미 (인)	집행책임자	고경미 (인)
		입찰결과	낙찰

(단위 : 원)

번호	입찰자 구분	입찰자 (대리인)	입찰자 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입찰금액	납부 보증금	보증금 상태	참가 수수료	입찰서 제출일시	낙찰여부	납부방법 *2)
				사업자등록번호								
1	개인	김	본인입찰			18,200,000	910,000	이체계좌 오류	0	2018-02-14 14:08:10	낙찰	현금
2	개인	박	본인입찰			12,500,000	625,000	환불완료	0	2018-02-14 15:31:50	유찰	현금
3	개인	오	본인입찰			11,829,902	591,496	환불완료	0	2018-02-13 17:46:53	유찰	현금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2018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4월) / 결산전망	
3,084	3,084	3,063	3,063	3,359	6,066	6,066	6,066 / 6,066	6,423

■ 기타이자 수입

- ‘기타이자 수입’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2019년도에 지급한 시비보조금을 보조사업자(자치구, 수도방위사령부, 재향군인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최근 5년간의 이자수입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전년(47만원) 대비 0.1% 증액된 4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비상기획관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처리 해오다가, 2017년부터 ‘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2018년부터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2019년 ‘기타이자수입’ 세입추계 과정을 보면, 최근 5년간 이자수입 평균액(499,106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기타이자수입의 수납액은 97만원 임에도, 2020년 세입 편성시에는 일부(527,710원)만 반영하여 추계하였음.

※ 2017년 기타이자수입에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가 착오로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비상기획관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서 중>

과목 조직-장-관-항-목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 ㉔	수납액			미수납액 ㉕=㉔-㉓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639,086,000		639,086,000	650,540,610	647,752,240		647,752,240	2,788,370
200 세외수입	15,109,000		15,109,000	26,563,610	23,775,240		23,775,240	2,788,37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63,000		3,063,000	4,264,630	4,036,120		4,036,120	228,510
216 이자수입				1,202,000	973,490		973,490	228,510
216-06 기타이자수입				1,202,000	973,490		973,490	228,510

② 2020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0년 추계액 : 499천원
- 산출내역
 - 2,495,530원 ÷ 5년 = 499,106원
 - 최근 5년간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단위 : 원)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자수입	2,495,530	525,000	615,180	544,860	527,710	282,780

○ 이처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세입계상 결과로, 결산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예산편성 없이 세입(973천원)처리하고, 2018년도의 경우 144.4%(618천원)의 결산률을 보이는데,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에 맞는 적정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기타이자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	2,697	-	973	428	618	428	0	492	499
(결산률)	-	-	-		(144.4%)			(115.0%)	

■ 시·도비 반환금수입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사업을 위해 2019년도 자치구에 지급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최근 2년간 반환률(1.7%)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5%(4백 6만 8천원) 감액된 1천 326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 2019년의 경우 59.8%의 결산률이 전망 되는 등, 매년 예산과 결산 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10,367	15,227	10,369	19,706	18,350	16,407	17,332	-	10,365	13,264
	146.9		190.0		89.4			59.8	

- 2018년도 자치구 보조사업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783,584	773,219	10,365
1	민방위교육운영비	343,674	334,276	9,398
2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6,625	16,625	0
3	민방위교육훈련준비 및 행사추진	30,000	29,033	967
4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0
5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38,260	38,260	0
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05,025	305,025	0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교부확정통지) 기준으로 전년 최종 예산(7억 6,018만원) 대비 19.3%(1억 4,701만원) 감액된 6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당초예산 6억 2,458만원 대비 1.8%(1,141만원)가 감액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2천 3백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2억 9천 5백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1천 4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2억 8천만원)’ 등 4개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2020년 비상기획관 세출예산(72억 5,350만원)의 8.5%(6억 1,316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비상기획관은 16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비상기획관 2020년 세출예산 사업〉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1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국가전쟁지도지침	
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3,100
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법	
5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법	
6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국가보훈법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7	시민안보의식 함양	재향군인회법	
8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법	
9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기본법	295,464
10	민방위대교육훈련-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기본법	14,250
1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기본법	(130,000)*
12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기본법	
13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4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민방위기본법	
15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민방위기본법	
1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기본법	280,350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국고보조금(민방위교육 통지서 전자고지 관련) 1억 3천만원은 1회성 공모사업에 의한 것으로 제외하여 분석함.

-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 등 대부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고 보조 규모가 8.5%에 그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운영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사업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처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업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 등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교부부처	세부사업명	2019년 (최종)	2020년	증 감 (총액)
합 계			(x630,178) 1,602,848	(x613,164) 1,294,560	(x△17,014) △308,288
국 고 보조금	행 정 안정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x31,500) 36,665	(x23,100) 31,255	(x△8,400) △5,410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x5,600) 5,600	(x0) 0	(x△5,600) △5,600
		민방위교육운영비	(x307,172) 647,120	(x295,464) 625,005	(x△11,708) △22,115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x14,250) 30,875	(x14,250) 30,875	(x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x271,656) 882,588	(x280,350) 607,425	(x8,694) △275,163

- ※ 2019년 1회성 공모사업 국고보조금(1억 3천만원) 제외
- ※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는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7%(840만원) 감액된 것임.
- ※ ‘민방위교육운영비’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8%(1천 171만원) 감액된 것임.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국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869만원) 증액되었음.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72억 5천 3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8억 3백만원 대비 6.6% 증액된 수준임.
- ※ 2019년도 간주처리,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73억 1천 3백만원 대비 0.8%가 감액된 수준임.
- ※ 주요 증액 사업은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 1천 5백만원(574.4% 증),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에 3천만원(32.1% 증) 등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민방위 교육 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에서 1억 4천 2백만원(43.0% 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에서 2억 7천 5백만원(31.2% 감) 등임.

가.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 본 사업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영상·음향 시스템, 화재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574.4%(4억 1,496만원) 증액된 4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2,248	(x-) 72,248	(x-) 487,209	(x-) 414,961	(x-) 574
사무관리비	(x-) 0	(x-) 0	(x-) 3,200	(x-) 3,200	(x-) 0
공공운영비	(x-) 67,248	(x-) 67,248	(x-) 69,178	(x-) 1,930	(x-) 2
시설비	(x-) 5,000	(x-) 5,000	(x-) 410,831	(x-) 405,831	(x-) 8,116
자산및물품 취득비	(x-) 0	(x-) 0	(x-) 4,000	(x-) 4,000	(x-) 0

- 주요 증액 사유는 총무시설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4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상황실(4개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1억 2천 6백만원), 총무기밀실 멀티스크린 컴퓨터 및 DID²⁾ 교체(1억 8천 2백만원), 화자추적 시스템 구축(9천 1백만원), 중앙제어실 기능개선 및 인테리어(1천 2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본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2년에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통합방위상황실 영상·음향시스템 및 DID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음.

○ 추진경위

- 2012. 9. : 서울시 총무상황실 구축 완료(구축비 : 795,801천원)
- 2013. 3. : 서울안전통합센터로 명칭변경(총무/재난/교통)
- 2014. 9. :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영상·음향 시스템 하자담보 종료
- 2018. 6. : 서울안전통합센터 내 통합방위상황실 영상시스템 구축 완료
(구축비 : 187,218천원)

□ 2018년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신청사 지하3층)
- 규 모 : 면적 1,572㎡
- 사업내용 :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영상·음향 시스템, EMP방호시설, 화생방방호시설 유지관리, 상황실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방위상황실 DID설치(디지털정보 표출시스템)
- 총사업비 : 239,120천원

2)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 공공정보 게시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총칭.

○ 2020년에는, 2012년 9월 서울안전통합센터에 구축된 영상·음향 시스템 (2013년산)과 2018년 6월 통합방위상황실 디지털화 추진에 따른 DID 등 장치에 대하여, 통합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황실 4개소를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총무기밀실의 멀티스크린 컴퓨터 및 DID를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멀티스크린 컴퓨터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임.

<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편성 내역 >

	2018년	2019년	2020년
시설비	○ 총무시설 개선비 9,955,000원 *1회 = 9,955천원	○ 총무시설 개선비 5,000천원*1회 = 5,000천원	○ 총무시설 통합(공유)제어 시스템 구축 = 410,831천원 - 상황실(4개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125,600천원
	○ 통합방위상황실 디지털화 추진 187,220,000원*1회 = 187,220천원		- 총무기밀실 멀티스크린 컴퓨터 및 DID 교체 181,793천원
			- 화자추적 시스템 구축 90,938천원 - 중앙제어실 기능개선 및 인터리어 12,500천원
비 고			
	통합방위상황실 DID설치		- 총무시설 통합(공유)제어 시스템 구축

< 총무시설 구축 및 운영 예산 사용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합계		1,344,366	1,236,369
2012년	총무 종합상황실 구축	864,919	800,099
2013년	.	.	.
2014년	.	.	.
2015년	총무시설 개선비	10,000	9,790
	EMP 방호시설 성능검사	15,000	14,540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8,000	6,798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	32,645	26,581

연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2016년	충무시설 개선비	9,934	9,630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8,300	8,294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	32,645	28,585
2017년	충무시설 개선비	9,955	8,600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8,300	8,294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	32,645	28,539
2018년	통합방위상황실 DID설치	187,220	187,218
	충무시설 개선비	9,955	9,680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9,955	9,680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	32,645	21,519
2019년	충무상황실 유류비	14,070	13,849
	충무시설 개선비	5,000	4,950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9,300	7,750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	43,878	31,973

※ 충무시설 개선비 : 충무시설관련 유지관리용역 외 시설 보수·보강

- 화생방시설 MCT블럭 설치, 방폭문 전자석 잠금장치 설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 EMP 방호시설 성능검사비 : EMP 차폐성능검사 용역비

※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업체 용역비 및 소모품 교체비

※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비 : 영상·음향장비 정기점검 및 장애관리

○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규모(411백만원)나 시스템간 호환성 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설치 시기를 달리하여 개별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할 것인바, 당초 종합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한 곳에 위치한 4개의 상황실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통합제어시스템 등의 시설은 행정안전부나 타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령상 직접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바, 서울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시설비 투입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비상기획관은 본 사업의 근거로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 및 「국가 지도통신망 운영지침」(미래과학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총무시설 설치 및 평상시 기능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예산 조정 시 총무시설 통합제어시스템 구축비 예산 요구액 중 1억 124만원이 삭감된바 있음.

나.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본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1%(3천만원) 증액된 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93,480	(x-) 93,480	(x-) 123,480	(x-) 30,000	(x-) 32
사무관리비	(x-) 55,030	(x-) 55,030	(x-) 85,030	(x-) 30,000	(x-) 54
국외업무여비	(x-) 25,000	(x-) 25,000	(x-) 25,000	(x-) 0	(x-)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3,450	(x-) 13,450	(x-) 13,450	(x-) 0	(x-) 0

- 주요 증액 사유는 2018년도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온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용역’(3천만원)의 책자 결과물의 부실 등을 사유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201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2020년에 ‘서울수복 관련 의견 청취 등’(3천만원)의 명목으로 다시 편성함에 따른 것임.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편성 내역 >

	2018년	2019년	2020년
사무 관리비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63,0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33,0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27,400천원
	- 참석수당 100,000원*20명*10회 = 20,0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6명*10회 = 24,0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7명*8회 = 20,4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20명*4회 = 8,0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4명*10회 = 4,0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4명*5회 = 2,000천원
	- 정책개발 워크숍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정책개발 워크숍 3,500,000원 = 3,500천원	- 정책개발 워크숍 3,500,000원*1회 = 3,500천원
	-	-	- 중앙재어실 기능개선 및 인터디어 12,500천원
	-	- 위원회 회의 운영 1,500,000원 = 1,500천원	- 자문단 회의 운영 1,500,000원 = 1,500천원
-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용역) 30,000,000원 = 30,000천원	-	○ 서울수복 관련 의견 청취 등 30,000,000원 = 30,000천원	
비 고			
- 통합방위협의회 임차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조정 - 안보정책자문단 참석회비가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됨에 따른 수당 등 조정 - 서울수복 관련 의견 청취 등 신규 편성			

※ 비상기획관은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단체·시민·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천 만원을 편성한 것임(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추진방안(민방위담당관-16374, 2019.11.6.)).

- 다만,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19.11.~2020.5.)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별도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의 편성으로 보이는 바, 2018년까지 매년 추진해온 기존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집착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보정책자문단을 두면서 분기 1회 개최(연 4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연 8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당 등을 편성하였는바,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회의결과 검토 등 과도하고 불필요한 회의소집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한 검증과 함께 당초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9. 3. 28., 일부개정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 본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작전 수행 능력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6%(6천 1백만원) 감액된 2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을지훈련 준비 및 실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93,873	(x-) 293,873	(x-) 233,244	(x-) △60,629	(x-) △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6,859	(x-) 6,859	(x-) 7,250	(x-) 391	(x-) 5
사무관리비	(x-) 215,351	(x-) 215,351	(x-) 154,331	(x-) △61,020	(x-) △28
공공운영비	(x-) 46,763	(x-) 46,763	(x-) 46,763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300	(x-) 3,300	(x-) 3,3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21,600	(x-) 21,600	(x-) 21,600	(x-) 0	(x-) 0

- 주요 감액 사유는 2018년도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 방침³⁾에 따라 축소 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25.9%(7,603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필요예산이 대폭 감소된 데에 따른 것으로,
- 주로 상황판 및 각종 유인물, 시민 안보행사비, 급량비, 훈련기간 등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28.3%(6,102만원)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 또한, 을지태극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지방자치법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본 사업은 민방위 관련 행사추진,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 보급, 민방위 교육 강사 선발, 비상대비 업무분야 자치구 평가, 민방위 발전안 연구용역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0%(1억 4,245만원) 감액된 1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3)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4)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21,410	(x130,000) 331,410	(x-) 188,962	(xΔ130,000) Δ142,448	(xΔ100) Δ42
사무관리비	(x-) 80,310	(x-) 80,310	(x-) 79,110	(x-) Δ1,200	(x-) Δ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8,100	(x-) 0	(x-) 0
연구용역비	(x-) 0	(x-) 0	(x-) 68,752	(x-) 68,752	(x-) 0
전산개발비	(x-) 0	(x130,000) 210,000	(x-) 0	(xΔ130,000) Δ210,000	(xΔ100) Δ100
행사실비지원금	(x-) 3,000	(x-) 3,000	(x-) 3,000	(x-) 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 비상기획관에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국고보조금(560만원)을 매년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바, 적기에 의회 예산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미리 중앙정부의 가내시 통보를 받아 세입예산에 편성 및 예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간주처리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설명이나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를 적정 사업에 편입하여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전산 개발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본 ‘전산개발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2019.4.25.)되어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임.

-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에 시비 8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은 본 전자고지의 법적 송달효력에 대하여, 통지 수신만으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전자고지의 송달효력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본인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절차>

1. 최초 발송 시 : 전자문서 수신동의여부 확인 → 통지서 열람

- 세부절차 : 자치구 (동주민센터) → 문자(또는 카카오톡) 발송 → 수신된 문자(카카오톡)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문서 수신동의 진행 → 통지서 열람
- 단, 전자문서 수신 미동의자 : 통장이 직접 전달

2. 최초 발송 후 미이수자 대상 추가발송 시 : 수신동의 확인절차 없음

- 세부절차 : 자치구 (동주민센터) → 문자(또는 카카오톡) 발송 → 본인인증 → 통지서 열람
- 단, 전자문서 수신 미동의자 : 통장이 직접 전달

3. 전자문서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 통장이 직접 전달

※ 송달효력이 발생해야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한 것임.

< 민방위 관련 법령 내 전자통지 및 고지 기능에 대한 근거 >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 또한, 신규편성한 연구용역비(6천 8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상기획관에서는 2019년을 제외한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안보 정책 개발 용역’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용역현황 〉

연도별	용역명	기간	계약방법 (금액)	계약업체명
2016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용역 (학술연구용역)	16.7.29 ~10.28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24,300천원) - 2회 유찰	사)한국국방발전 연구원
2017	서울형 민방위대원 교육 개선 방안 제안 용역 (일반용역)	17.8.1 ~10.29	일반경쟁입찰 (24,545천원)	사)21세기군사 연구소
2018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방안 연구용역 (일반용역)	18.8.1 ~10.31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26,995천원) - 2회 유찰	사)통일안보전략 연구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 및 추가제출자료 편집

- 그동안의 용역 성과를 보면, 2017년 용역 결과물은 99쪽 분량에 민방위 교육장 현장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내용면에서는 현황 기술이 주를 이루는 출장결과 보고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정도이며, 2016년과 2018년도의 경우 최종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음.

※ 2018년도 결과물의 경우 보안사항임을 이유로 미열람 .

- 2020년에는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나, 유사한 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의 용역 성과로 볼 때 본 학술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공고 내역

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 입찰공고번호 : 20190539562-00
- 공고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제도 개전방안 연구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공고일 : 2019.05.28., 개찰일 : 2019.06.10.

※ 출처 : 나라장터 누리집(국가종합전자조달)

과업지시서 중 과업개요

- (과제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제도 개선방안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 (연구필요성)
 -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 재난발생·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민방위 운영*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 훈련, 시설장비 관리 등
 - 재래식 군사위협 뿐 아니라 재난 및 국민의 생활안전까지 책임지는 포괄안보 개념에 부응하는 민방위 분야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 민방위대의 역할 재정립, 교육·훈련 모델, 시설·장비 관리 운영 등
- (주요연구내용)
 - 민방위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분석
 -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분야별* 민방위 운영 모델
 - * 민방위 조직·교육·훈련·시설장비 등
 - 민방위기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발굴
 - 선진 민방위 사례 분석 및 민방위의 효과적 홍보방안 등
- (추진방식) 위탁형 연구용역

구 분	서울시(민방위담당관)
용역명	「시민을 위한, 친숙한」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용역기간	2020. 2~7월(6개월)
예산	68,752천원
업체명	추후 경쟁입찰
용역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교육 참여율 향상방안(불참자/열외자 분석 포함) •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선발개선(자격, 선발기준, 평가방법 등) • 지원민방위대,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편성 보완/활성화 •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장비(6종) 편성기준 재정립 • 확보율이 저조한 민방위 방독면 확보 방안 • 민방위 경보체계 보완 • 민방위 대피시설 발전방안(5대 권역별) 검토 등

마.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본 사업은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과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791만원) 증액한 2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 7,910천원
		-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2명*6회 = 1,800천원
		- 표지판 문안 감수료 30,000원*65개 = 1,950천원
	- 표지판 문안 번역(영문)료 64,000원*65개 = 4,160천원	
	증감사유	
	- 사라져가는 6.25 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 추진에 따라 자문·감수·번역료 등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180,000천원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185,000천원
	- 버스임대료 500,000원*115대 = 57,500천원	- 버스임대료 500,000원*115대 = 57,500천원
	- 이용료, 체험비 등 12,000원*4,600명 = 55,200천원	- 이용료, 체험비 등 12,000원*4,600명 = 55,200천원
- 식비(중식,간식)/도서구입비 12,500원*4,600명 = 57,500천원	- 식비(중식,간식)/도서구입비 13,500원*4,600명 = 62,100천원	
- 안전요원 인건비 100,000원*98명 = 9,800천원	- 안전요원 인건비 100,000원*102명 = 10,200천원	
○ 6.25전쟁 기념행사 = 20,000천원	○ 6.25전쟁 기념행사 = 25,000천원	
- 행사장 대관료 3,500,000원	- 행사장 대관료 4,500,000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 3,500천원	= 4,500천원
- 강사료/인건비(사회자, 군악대 등)	2,500,000원	6,500,000원
	= 2,500천원	= 6,500천원
- 참전용사 위문품	10,000원*1,000명	10,000원*1,000명
	= 10,000천원	= 10,0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4,000,000원	4,000,000원
	= 4,000천원	= 4,000천원
○ 나라사랑 안보포럼	= 20,000천원	= 10,000천원
- 강사료	350,000원*6명*2회	350,000원*6명*1회
	= 4,200천원	= 2,100천원
- 대관료	4,500,000원*2회	4,500,000원*1회
	= 9,000천원	= 4,500천원
- 기념품	9,000원*250명*2회	9,000원*250명*1회
	= 4,500천원	= 2,25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300,000원	1,150,000원
	= 2,300천원	= 1,15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대관료 인상 및 공연비 추가 - (증)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관련 식비인상 및 안전요원 증원 - (감) 나라사랑 안보포럼 강연횟수 2회에서 1회 축소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791만원)은 한강대교 탄흔 등 사라져가는 6·25 상흔 발굴사업에 대한 수도권방위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유적지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문안 감수 및 번역료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까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사랑 안보포럼’(예산 2천만원)의 경우, 토론자가 재향군인회 위주로 구성된 이유로 지속적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등,

- 9년째 같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 효과 증대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향군 안보포럼, 나라사랑 안보교육(56,500천원) → 2018년 나라사랑 안보포럼으로 통합(3천만원)→ 2019년 2천만원 → 2020년 1천만원으로 관련 예산 감액 추세.

바.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 본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사태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방공, 방재, 구조, 군사작전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6종) 확보를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402만원) 감액한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7,406	(x-) 37,406	(x-) 33,383	(x-) △4,023	(x-) △10
자치단체자본보조	(x-) 37,406	(x-) 37,406	(x-) 33,383	(x-) △4,023	(x-) △10

- 민방위 사태 대비 필요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의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감액편성 사유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의 감소에 따른 것임.
- 한편,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3조에서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사업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하여 기준보조율로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국가적 사무의 보조사업자로서 비상기획관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 >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이하 생략)		

사.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 본 사업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사업소 포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관리 및 복무자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1천 3백만원) 증액한 6억 8천 2백만원(전액 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669,067	(x-) 669,067	(x-) 682,087	(x-) 13,020	(x-) 1
사무관리비	(x-) 5,651	(x-) 5,651	(x-) 6,121	(x-) 470	(x-) 8
공공운영비	(x-) 6,720	(x-) 6,720	(x-) 6,416	(x-) △304	(x-) △4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900	(x-) 900	(x-) 900	(x-) 0	(x-) 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x-) 655,796	(x-) 655,796	(x-) 668,650	(x-) 12,854	(x-) 1

-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봉급, 식비, 교통비 등)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관리는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라 할 것인바, 사실상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2019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536명 중 일반행정 지원요원 83명에 대한 보상금(사업소 등 특별회계분 미포함)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바, 국비지원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환자구호·환경보호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와 같이, 일반행정지원요원의 보상금 또한 국고보조를 통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현황> (기준, 2019.10.31.현재, 단위:명)

연번	기관(근무지)명	인원	복무분야	비고
1	민방위담당관	8	일반행정지원	
2	차량공해저감과	11	환경보호감시	환경부 국비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일반행정지원	
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43	재난안전관리	소방청 국비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정수운영과)	6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11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	뚝도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13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10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	암사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16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번	기관(근무지)명	인원	복무분야	비고
10	강북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9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	38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12	보건환경연구원(연구지원부)	13	일반행정지원	
13	어린이병원(원무과)	4	환자구호업무	보건복지부 국비
14	은평병원(원무과)	29	환자구호업무	보건복지부 국비
15	서북병원(원무과)	20	환자구호업무	보건복지부 국비
16	한성백제박물관(총무과)	2	일반행정지원	
17	서울역사박물관(총무과)	2	일반행정지원	
18	서울도서관(정보서비스과)	2	일반행정지원	
19	동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42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20	중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26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21	서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54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22	동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15	일반행정지원	
23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2	일반행정지원	
24	남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6	일반행정지원	
25	북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9	일반행정지원	
26	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27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9	일반행정지원	
28	중량물재생센터(관리과)	21	행정기관경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	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행정처	13	일반행정지원	
	합계	536		

※ 사회복지무원 536명중 일반행정지원 분야 중 83명 보상금 서울시 일반회계 편성 집행

※ 2019. 10. 현재 시 본청 일반행정지원요원 83명에 대한 급여 등 보상금 배정액: 5억 5,680만원

○ 한편, 사회복지무원의 보상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이 2017년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고보조를 통한 사회복지무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중(의안번호: 2010006(2017.11.3.)) 이철희의원 등 12인

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본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 준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확충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 강화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31.2%(2억 7천 5백만원) 감액한 6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271,656) 588,588	(x271,656) 882,588	(x280,350) 607,425	(x8,694) △275,163	(x3) △31
자치단체 자본보조	(x271,656) 588,588	(x271,656) 882,588	(x280,350) 607,425	(x8,694) △275,163	(x3) △31

- 본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서울시 방독면 확보율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자치단체자본보조(2억 9천 4백만원, 전액 시비) 편성분을 제외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임.

□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2019.6.28.)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기준2019.6.28.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자본보조	(x271,656) 882,588	(x271,656) 588,588	(x-) 294,000

※ 산출식: 14,000개 × 42,000원 × 50% (시·구비 50:50 매칭 사업)

- 한편, 국고 보조금 대상 사업 주체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국고 보조율을,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국고 보조 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비용 부담은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은 30%로, 나머지 70%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반씩 (50:50)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사업의 국가 및 자치단체 경비부담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이하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 업 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109번 생략					
110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이하생략)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 방독면 추가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국비 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치구)의 재원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방독면을 구매하였는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법령에 따라 국비 매칭을 통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국 17개 시·도 방독면 확보율 현황〉 (2018.12.31. 기준)

상위순위	시도명	확보율(%)	하위순위	시도명	확보율(%)
1	경 북	111.6	15	대 전	34.5
2	전 남	101.2	16	부 산	27.6
3	충 북	75.5	17	서 울	26.2

※ 전국 광역자치단체 방독면 평균 확보율: 49.9%

※ '19년 추경 예산 반영시 31.7%로 확보율 개선

□ 자치구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 ('19. 10. 31. 기준)

구 분	소요량 (개)	보유량 (개)	부족량 (개)	보유율 (%)
합 계	665,596	213,067	452,529	32.0%

○ 한편, 2018년 말 기준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 보유율은 50%(49.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서울시는 국비없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방독면 추가 구매에도 불구하고 32.0%의 보유율에 그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 방독면 보유율 제고 방안 마련에 비상기획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